



60년을 한결같이 100년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

[제23회 한국세무포럼]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일시 : 2022. 8. 26(금) 14:00

장소 :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

개회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좌 장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발 표

김상겸 교수(동국대)

토 론

서보국 교수(충남대)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함택동 연구원 (한국세무사회)

[공지사항] * 포럼 영상 촬영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 탑재 예정

* 발표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 한국세무포럼 게재



한국세무사회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및 안내
14:00-14:05	(개 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14:05-14:45	좌 장 홍도현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주 제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발 제 김상겸 교수 (동국대)
14:45-15:30	지정토론 서보국 교수 (충남대),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함택동 연구원 (한국세무사회)
15:30-15:45	자유토론
15:45-15:50	(폐 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 주 제 :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I. 들어가는 말	9
II.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개관	11
III.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법적 쟁점	17
IV.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헌법적 평가	21
V. 맺음말	27
토론문 서보국 교수	31
토론문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	36
토론문 함택동 연구원	43

주 제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주제발표자 | 김 상 검 교수
(동 국 대)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김상겸 교수 (동국대) |

I. 들어가는 말

고도의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의 각 분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는 사회환경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웹 2.0의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플랫폼은 IT기술과 접목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경제영역에 진입하였다. 플랫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이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아도 이제 현대사회에서 플랫폼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플랫폼이란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던 인류의 역사처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영역에서 플랫폼은 가장 활발하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플랫폼은 IT기술에 기반한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소액으로 구축을 할 수 없어서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거대 정보통신기업의 참여로 인한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사업의 독과점화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환경이 혁신적으로 발전·변화하였다. 온라인의 발전은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하게 서비스화하였고 사업모델도 다양화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면서 플랫폼시장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넘어서 전문분야에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²⁾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집중을 규제하기 위하여 온라인에 초점을 맞추어 통신규제의 형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다가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화에 관한 법률안이나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안 등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³⁾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분야에서 플랫폼화 문제는 플랫폼 시장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전문직종사자를 소개하는 형식이었지만 점차 중개사업자로서 기능하면서 전문직의 특수성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⁴⁾ 이러한 충돌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LAWTALK)이란 리걸 플랫폼 간의 분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의 대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일단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전승을 하였다.⁵⁾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법제화하였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플랫폼의 발전역사와 관련해서는 박미영,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적용의 이해 필요성”,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유통법학회, 2018, 111면 이하 참조.

3) 이에 관해서는 이성엽·이승민,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 편,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22, 5면 이하; 박상철, “플랫폼법”,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한국법학원, 2022, 345면 이하 참조.

4) 우리나라는 전문자격사제도와 관련하여 각 전문자격사법에 따라 관련 직업에 진입을 규제하는 형태로 전문 직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법률, 의료, 세무분야 등에서 전문자격사협회와 플랫폼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5) 헌재 2022. 5. 26. 2021헌마619.

전문분야에서 플랫폼 문제는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세무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분야 플랫폼인 ‘삼점삼’에 대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와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수사당국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세무대리의 소개 및 알선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이 규정이 세무분야에서 직무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 플랫폼 기업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⁶⁾ 여기서는 우선 플랫폼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고, 현재까지 논의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개관

1.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와 특성

(1)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플랫폼(platform)은 원래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한 장소를 말한다.⁷⁾ 이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매개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플랫폼은 서로 다른 이용자들의 거래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물리적·가상적·제도적 환경을 말하기도 한다.⁸⁾ 이렇게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것을 플랫폼이라 부르면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플랫폼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분야는 ICT로, 이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플랫폼이라 하기도 한다. 그런데 플랫폼이 경제분야

6) 세무사법 제2조의2와 관련하여 세무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 매칭서비스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제의 위헌론 입장에서 견해를 밝힌 논문으로는 박종현, “플랫폼 기업의 전문가 매칭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 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2, 309면 이하 참조.

7) 네이버 국어사전(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vmffotvha&qdt=0&ie=utf8&query=%ED%94%8C%EB%9E%AB%ED%8F%BC+%EB%9C%BB, 2022. 8. 8. 최종 방문).

8) 박미영, 앞의 논문, 115면.

에서 경제주체 간 생산과 소비의 교환하는 것을 지칭하면서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가 등장하였다. 특히 플랫폼 경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플랫폼에 관한 정의는 다양해서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플랫폼을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사회학적으로 플랫폼은 다수의 사람 간에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데이터화하여 네트워킹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며, 사업모델의 관점에서는 사람·조직·자원 간의 상호작용하는 생태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고 있다.⁹⁾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이를 정립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플랫폼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없다.¹⁰⁾ 현재 여러 국가에서 플랫폼에 관한 법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2016년 프랑스는 디지털 공화국법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제3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정보처리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류 또는 등록하는 것”이라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재화 판매, 서비스의 제공, 콘텐츠·재화·서비스의 교환 또는 공유를 위하여 여러 당사자를 매개시키는 것을 직업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

우리나라는 2021년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호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식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¹²⁾ 또한, 이 법률안에는 제2조 제5호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정의하여

9) 이러한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3면 이하.

10) 현재 우리나라 법제를 보면 플랫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2022. 7. 1. 제정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2호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에 하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1)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5면 이하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다.

12) 국회에 제출되었던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정의 및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 제22집, 경북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의 접수, 또는 서비스에 부수되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등이라 하고 있다.¹³⁾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대신 디지털 플랫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 용어에 대하여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 또는 콘텐츠의 거래와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교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⁴⁾

우리나라 법률안들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이용자와 소비자 등 모두를 규율하는 것에 비하여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안은 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저장 및 전파하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이상의 플랫폼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 아직 법률안에 불과하지만, 플랫폼이란 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재화·용역·콘텐츠 등의 이용이나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자를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기업이라 할 수 있다.

(2)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플랫폼이 주목으로 받게 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플랫폼이 디지털화 또는 온라인화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면서 급격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¹⁶⁾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 예상을 넘어서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이며, 이는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IT와 법연구소, 2021, 133면 이하 참조.

13)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6면 이하 참조.

14)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7면 참조.

15)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7면 이하 참조.

16) 이승민,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서울대 아시아 태평양법연구소, 2022, 99면 참조.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영업비용의 축소 내지 절감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의 인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활용 등을 통한 성장기회의 확대,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한 경쟁의 활성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는 규모 대비 최대의 수익,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의 역할 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이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장이 형성된다. 디지털 시장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면적 시장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플랫폼을 체계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시장 트렌드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개인화된 사업모델 등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수집·접근·축적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진입장벽,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경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특성도 나타난다.¹⁸⁾

2.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1)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논의

세계적 기업인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를 통칭하여 ‘GAFA’라고 부르는데, 이 글로벌 거대 정보통신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에는 고도의 정보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빅테크는 디지털 정보기술을 앞세워 수많은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공정경쟁을 훼손시켰다.¹⁹⁾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은 여러 법적 분쟁 중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송전을 벌이면서 승리를 이어가면서 현재에 위치까지 왔다. 그렇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라 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²⁰⁾ 플랫폼 규제에 진심인 유럽

17)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8면.

18) 최난설현,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편,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342면 이하 참조.

19) 남형두, “플랫폼과 법 - 절전(折箭)의 교훈 -”,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21, 224면 이하.

20) 박상철, 앞의 논문, 348면 이하. 특히 이 논문에서는 350면에 2021년 말 각국의 선도 플랫폼에 대하여

연합은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시행하면서, 규제가 강화된 「디지털 시장법」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²¹⁾ 일본도 2021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²²⁾

유럽연합과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미국은 2020년 연방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소수의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반독점법안을 패키지로 준비·발의하였다. 이 반독점 패키지 법안들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데이터 이동·호환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기업결합 심사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등 5개 법안으로, 미국 역사상 기업 반독점 법으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²³⁾

이상에서 대표적으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일본 및 미국 등에서 대하여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지만, 플랫폼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경제는 발전을 위하여 신산업이 계속하여 형성될 것이란 점에서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간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찬반론이 있지만, 현재의 흐름은 규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국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확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사적 측면에서 보면 특정 기업의 독과점은 결국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경제를 퇴보시키고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런 우려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규제에서도 경제주체인 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빅테크들이 대부분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최은진, “온라인플랫폼법(안)의 향방과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 상사법연구 제4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152면 이하.

22) 일본 법제에 대하여 자세히는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6면.

23) 미국의 법률안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최은진, 앞의 논문, 156면 이하.

24) 이에 대해서는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12면 이하 참조.

규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²⁵⁾

(2)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입법화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서비스도 통신으로 보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의 경우 통신서비스인지 또는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정보서비스인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온라인서비스를 전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간주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해 왔다.²⁶⁾ 이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플랫폼 규제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²⁷⁾

플랫폼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독자적 규제법을 만들든지 기존의 경쟁법체제에 편입시켜 규율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관계를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의원안과 정부안 등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가 후에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안을 준비하고 있다.²⁸⁾

이런 규제방향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최종 소비자 간 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시한 관련 법률들을 통하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유럽법연구소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도 등장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법안들은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²⁹⁾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이 예고되어 있다.

25) 이와 관련해서는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경쟁법연구 제45권, 한국경쟁법학회, 2022, 3면 이하; 김태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22, 1면 이하.

26) 플랫폼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법리 문제에 대하여 박상철, 앞의 논문, 353면 이하.

27) 박상철, 앞의 논문, 355면 이하; 이승민, 앞의 논문(주 16), 101면.

28) 이에 관해서는 이성엽·이승민, 앞의 책, 7면.

29) 이승민, 앞의 논문(주 16), 100면 이하.

Ⅲ.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법적 쟁점

1. 세무분야 플랫폼의 현황

(1) 전문분야에서 플랫폼의 현황

앞에서 본 것처럼 전문직종의 각 분야에서도 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도의 정보사회 또는 디지털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시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에듀테크가 교육분야에서 대세가 된 상황에서 법률분야에서 리걸테크는 확산되고 있다.³⁰⁾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다.³¹⁾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고 하였다.³²⁾

법률분야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독일 법학계에서도 중개 플랫폼이 단순한 광고나 중개하는 기능에 한정한다면 변호사법의 위반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³³⁾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법률분야 플랫폼을 통하여 개별적 사안에 대한 수임의 취득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광고를 통한 직업적 외부 표현이 직업행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하였다.³⁴⁾ 이는 변호사의 광고행위가 직업행사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내용 또는 형태상의 부당성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문분야 플랫폼과 관련된 논란은 전문직역의 직업활동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를 넘어서 전문자격사제도에 침해가 되는지 여부 등 전문분야마다 갈등의 원인은 다소 차이가 있다.³⁵⁾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 없이 변호사 정보를 안내한다는 로톡에 대하여 대한

30) 이와 관련해서는 박유리, “법률 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82회 학술세미나, 2022. 4. 1., 참조.

31) 헌재 2022. 5. 26. 2021헌마619.

32) 헌재 2022. 5. 26. 2021헌마619.

33) 독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해서는 이병준,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16면 이하 참조.

34) BVerfGE의 결정에 관한 NJW 1996, 3067(이병준, 앞의 논문, 19면 이하에서 재인용).

35) 박유리, 앞의 발표문, 11면 참조.

변호사협회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법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풍부하고 투명한 성형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료분야의 강남언니 플랫폼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광고의 심의기준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의료분야와 달리 비대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방에 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거대 플랫폼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종합 소득세 신고나 세금 환급 서비스 등을 표방하는 삼쩜삼 세무분야 플랫폼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세무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플랫폼과 해당 협회 간의 분쟁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2) 세무분야의 플랫폼 현황

전문분야의 플랫폼의 등장은 세무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세무분야의 플랫폼에는 자비스앤빌런스의 ‘삼쩜삼’, 세무통, 주식회사 세친구의 세친구 등이 있다. 각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플랫폼 서비스 내용

업체명	세무통 (대표 김인수)	자비스앤빌런스 (대표 김범섭)	주식회사 세친구 (대표 한세옥)
서비스명	세무통	삼쩜삼	세친구
서비스 개요	· 세무대리 가격 비교 및 매칭 (제휴 세무사 약 616명)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세 환급 * 기업용 AI경리 ‘자비스’ 별도 - 자비스 세무대행	· 세금자료 수집 후 장부작성 · 매입·매출 관리
특징	· 입찰방식을 통한 최저가 세 무사 매칭 · 업체대표(김인수 회계사 자 격)	· 삼쩜삼 가입자 500만명, 평 균 환급액 13.8만원, 누적 환급액 1500억원 광고 · 기업용 AI경리 ‘자비스’ 누 적 가입사 5.9만개사, 누적 거래 34조원 광고	· 회계사와 업무제휴

파트너 세무대리인	· 세무사 및 회계사 다수	· 한결세무사사무소 (임시관 리번호) · 회계사 2명	· 회계사(6명)
이용료	· 소비자(무료), · 제휴세무사가 수수료 부담 (현재 수입료 6개월치 추정)	· 삼짍삼 1,000원~환급액 기준 약 10~15% 수준, 비 환급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또는 해지 처리 · 기업용 AI경리 자비스 (자비 스 세무대행 월80,000원)	· 월 44,000원
유사 서비스	찾아집세무사, 세무사매칭센 터, 네이버엑스퍼트, 세무앤, 구해집텍스, 피플라이프 * 일부 업체는 알선 소개의 덧가성 및 광고 서비스 불 명확	넬리소프트 SSEM, 텍스다이어트, 이지샷, 비즈에이드, 제로텍스, 세모장부, KT세모가게 *무자격 세무대리 모니터링 중	

한국세무사회 자료(2021. 10. 6)

이상의 세무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플랫폼은 제휴 세무사와 소비자인 최종 이용자 간의 중개를 통하여 소개받은 세무사로부터 수입료 중 일부를 매칭비로 받거나, 소비자인 가맹사업자와 제휴 회계사를 중개하는 알선행위를 한다거나, 프리랜서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면서 환급액의 일정 부분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수령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세무 플랫폼 중에 삼짍삼의 경우 세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한국세무사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2.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

(1) 전문자격분야와 플랫폼 서비스

앞에서 본 것처럼 플랫폼이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재화·용역·콘텐츠 등의 이용이나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전문분야의 플랫폼은 전문분야의 용역이나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또는 중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플랫폼과 달리 전문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는 플랫폼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전문자격사는 특정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³⁶⁾ 몇몇 특정 분야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데 국가는 이런 요구에 따라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³⁷⁾ 이렇게 특정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자격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통과한 자들로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직업수행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전문직업인이 된다.³⁸⁾

국가가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그래서 전문자격사제도에 따라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 활동하려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법적 쟁점

다른 전문분야와 달리 세무분야 플랫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사와 소비자 간의 중개나 소비자에게 세무사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세무분야 플랫폼은 플랫폼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관련 법제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세무사법의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이다.

예를 들어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의 경우,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세무사법 제22조 제12항 제1호를 위반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의 취급을 표시하고 광고하여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쟁점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쩜삼은 소비자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되는 광고로 인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36) 전문자격사는 국가의 특정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독점적인 업무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혜옥·김상겸, “세무사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7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2018, 107면).

37) 헌재 1997. 10. 30. 96헌마109,

38) 이승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면허제도」, 세창출판사, 2002, 209면.

앞에서 본 몇몇 세무분야 플랫폼의 매칭서비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세무사법 제2조의2에 근거한 규제 문제가 논의의 쟁점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에서 세무사법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플랫폼의 서비스에 관한 법적 쟁점은 플랫폼 기업이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직업의 자유에서 제한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세무사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³⁹⁾

IV.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헌법적 평가

1. 세무사제도와 세무분야 플랫폼의 헌법적 근거

(1) 세무사제도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사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이의신청·심사신청·심판신청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세무사법은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통하여 세무사를 정의할 수도 있다.

세무사자격은 세무사법의 개정 역사에서 그 변천사를 볼 수 있다. 1961년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 이외에 변호사, 계리사를 위시하여 상법·재정학·회계학·경영경제학 등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박사를 받은 자나 교수, 세무행정예 근무한 자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였다. 1972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 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국세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리되었다.

39) 이 점에서 세무사법 제2조의2와 세무 플랫폼 기업의 매칭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2조의2를 거론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박종현, 앞의 논문, 309면 이하 참조.

세무사자격 규정은 1999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재직경력자 규정이 삭제되는데 이런 변화는 전자세정의 도입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⁴⁰⁾ 그후 2003년에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 자격 취득으로 끝나지 않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만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까지 변호사 내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부칙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지만 세무사로서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세무사법은 2012년 개정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자격 규정을 삭제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이외에 세무사자격의 부여는 변호사로만 축소하였다. 그후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의 자동부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세무사자격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제도를 정비하였다.

국가가 전문분야에서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국가의 전문자격사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먼저 전자에 의한 규제를 받아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당 분야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자격사는 관련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다. 전문자격사제도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면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직업선택에 있어서 전문자격을 취득해야만 해당 분야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문자격사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헌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⁴¹⁾

40) 김진태·서정화, “세무사 자격제도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경영사학』 제31집 제2호, 한국경영사학회, 2016. 6, 104면 이하.

41)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전면적으로 금지한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전문자격사제도를 언급하고 있다(헌재 2002. 8. 29. 2002헌마160).

(2) 세무분야 플랫폼의 헌법적 근거

플랫폼이란 자체가 하나의 영업 형태라고 한다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의 자유, 플랫폼을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기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영업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는 개인이 갖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출발하는 기본권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의 자유를 갖는다.

직업의 자유는 개인, 자영업자, 기업 등 누가 행사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의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다.⁴²⁾ 직업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영업의 자유는 농업, 어업, 상업, 수공업 등 산업 분야에서 또는 누구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하는 자영업, 자유업 등으로 독립된 형태의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자유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 기업을 설립하여 경제활동과 영업할 자유를 말한다.⁴³⁾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데, 직업을 행사한다는 것은 직업 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직업의 행사는 영업의 활동이나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도 기업의 자유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통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조의 존중은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고 하였다.⁴⁴⁾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기업은 개인적 요소보다 기본권행사에 있어서 사회적 성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자의 권한이 더 광범위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회적 기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입법자의 규율의 강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⁴⁵⁾ 즉 개인과 달리 기업의 경우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보다 더 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무분야 플랫폼 기업의 경우, 개인의 직업의 자유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제한을 받게 된다.

4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677면.

43) 한수웅, 앞의 책, 677면.

44) 헌재 2022. 3. 31. 2019헌바494 참조.

45) 한수웅, 앞의 책, 677면.

2.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플랫폼 자체가 이용자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연결과정에서 광고나 중개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관련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플랫폼의 서비스가 광고를 통한 업무의 소개와 연결을 통한 중개가 헌법적으로 충돌하는지 여부와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의 관련 규정이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기업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1)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자격사제도는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전문자격사의 직업영역은 진입규제와 활동 규제라는 이중 장치에 의하여 국가법질서로부터 엄격하게 규율을 받는다. 이에 관해서는 각 전문자격사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다. 세무사의 경우도 세무사법 제1조에서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해야 하는 목적 내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플랫폼이 이용자들 간의 연결을 직업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법 제2조의2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것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소개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둘 사이에서 양편의 일이 진행되게 주선한다거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편이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 준다거나 또는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하여 주는 설명을 말한다.⁴⁶⁾ 그리고 알선은 국어사전에서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의 형사법적인 부정적 의미도 갖는다고 하고 있다.⁴⁷⁾

46)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4e9bc23c2eac4edab7ade4c643860e52>, 2022. 8. 8. 최종 방문).

47)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30f05cb080db43cb94ada551317155a3>, 2022. 8. 8. 최종 방문).

실정법에서 소개·알선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소개·알선으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⁴⁸⁾ 소개·알선은 전문자격사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소위 브로커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문분야에서 소개·알선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관련법의 목적에 따라 금지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하였다.⁴⁹⁾

변호사법이나 의료법과 유사하게 세무사법 제2조의2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가 갖는 공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가 직업활동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즉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세무사법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무분야에서 금품수수나 부당이익의 취득 등과 같은 비리를 근절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개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무사법의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규정이 세무분야 플랫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⁵⁰⁾ 그러나 이는 플랫폼이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을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선임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⁵¹⁾

법무부의 관점에서 보면 법률플랫폼이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형의 플랫폼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소개를 통하여 중개하는 것도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알선으로 불법 중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문분야의 플랫폼에 대한 몇몇 국가들의 입장은 인터넷 광고를 허용

48) 박종현, 앞의 논문, 317면 이하.

49)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그리고 헌재 2018. 7. 26. 2018헌바112.

50)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박종현, 앞의 논문, 325면 이하 참조.

51) 박유리, 앞의 발표자료, 19면.

하지만, 알선이나 주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차단하고 있다.⁵²⁾ 물론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플랫폼을 이용하고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중개행위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⁵³⁾

이상을 종합하면 전문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는 플랫폼이 갖는 기능에다가 전문자격사제도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전문자격사제도가 가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세무분야 플랫폼도 그 서비스는 세무사법에 따라 합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세무사법 제2조의2가 세무분야 플랫폼의 매칭서비스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⁵⁴⁾ 왜냐하면 세무분야 플랫폼의 매칭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세무대리 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분야 플랫폼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광고나 표시 등을 한다면 전문분야의 플랫폼으로서 관련 전문자격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활동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며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사법이 지향하는 세무사제도의 확립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며, 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모든 매칭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의 정당성 실현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이 역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도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성에서 보면 세무사자격제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관점에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차단하는 것이 세무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⁵⁵⁾

물론 플랫폼의 매칭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세무사법하에서 플랫폼의 매칭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52) 박유리, 앞의 발표자료, 25면 이하 참조.

53) 이병준, 앞의 논문, 18면 이하.

54) 이런 점에서 다른 견해는 박종현, 앞의 논문, 332면 이하 참조.

55) 이와 다른 견해는 박종현, 앞의 논문, 332면 이하. 같은 의견으로는 김신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82회 학술세미나에서 제3주제 “세무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의 토론문 참조.

어렵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환경이 현재와 다르게 변화하고 전문자격 사제도 자체의 입법정책이 변한다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2)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및 광고 문제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세무분야 플랫폼인 삼쩜삼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과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및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만의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관한 문제이다. 즉 관련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플랫폼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세무분야 플랫폼에서 행사하는 서비스가 국가실정법을 준수해야 함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제도를 확립하여 전문분야로서 세무분야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의무와 제59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법은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삼쩜삼은 세무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분야 플랫폼의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의 자유 보장 문제와는 별개의 세무사법 위반 문제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⁵⁶⁾

V. 맺음말

지금 이 플랫폼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를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 분야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하에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56)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82화 학술세미나에서 제3주제 “세무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한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의 토론자료에서 적시되어 있다.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그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문분야에서도 플랫폼은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분야의 플랫폼으로 세무분야에서 플랫폼은 앞으로 계속하여 등장하고 성장해 갈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리걸테크의 경우 이미 몇몇 선도국이 주도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독과점을 경계하며 다양한 규제를 법과 정책을 통하여 강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글로벌화된 거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국가가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분명하게 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문자격사에게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전문자격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이 전문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분야와 달리 규제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

플랫폼 자체가 그 성격이나 기능이 중개를 이용자 간의 중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연결하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행위에 대하여 등록된 세무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의 직업의 자유 보장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법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견해를 보더라도 전문분야에서 플랫폼은 광고형의 플랫폼은 법외반이라 볼 수 없지만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는 현행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점삼 플랫폼의 경우도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문제이지 플랫폼의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세무분야 플랫폼의 경우 세무사법의 범위 내에서 매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도 세무사법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사법이 세무사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세무분야 플랫폼도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형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정의 및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 제22집, 경북대 IT와 법연구소, 2021.
- 김신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82회 학술세미나 제3주제 “세무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박유리, “법률 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82회 학술세미나, 2022. 4. 1.
- 김진태·서정화, “세무사 자격제도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경영사학」 제31집 제2호, 한국경영사학회, 2016.
- 김태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22.
- 남형두, “플랫폼과 법 - 절전(折箭)의 교훈 -”,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21.
- 박미영,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적용의 이해 필요성”,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유통법학회, 2018.
- 박상철, “플랫폼법”,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한국법학원, 2022.
- 박유리, “법률 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82회 학술세미나, 2022. 4. 1.
- 박종현, “플랫폼 기업의 전문가 매칭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2.
- 이병준,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 이성엽·이승민,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 편,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22.
- 이승민,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22.
-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경쟁법연구 제45권, 한국경쟁법학회, 2022.
- 이승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면허제도」, 세창출판사, 2002.

이혜옥·김상겸, “세무사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7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2018.

최난설현,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편,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최은진, “온라인플랫폼법(안)의 향방과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 상사법연구 제4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토 론 문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서보국 교수 (충남대) |

1. 발표내용 요약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거래 vs. 전문직의 특수성 보호
: 로톡(LAWTALK) - 유료 변호사 중개 플랫폼
: 헌재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
-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대리 플랫폼 ‘삼점삼’에 대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와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수사당국에 고발(’21.3.26.)
: 한국세무사 고시회는 삼점삼의 불법 세무대리(‘한결세무법인’ 및 ‘세무법인 스타밸류’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처벌 관련 진정서를 제출(’21.7.16)
- ’21 개정 세무사법 제2조의2¹⁾: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금지 규정

: 세무분야 직무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 vs. 세무 플랫폼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개념과 규제: 규제법안들의 법제화 준비상태

(3)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현황과 법적 쟁점

- 현황

- 법적 쟁점1: 전문자격분야와 플랫폼 서비스

: ‘삼점삼’은 무자격자의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²⁾ 위반과 무자격자의 동법 제20조 제3항³⁾을 위반한 혐의

: ‘삼점삼’은 표시광고법 제3조⁴⁾를 위반한 혐의

- 법적 쟁점2: 세무분야 플랫폼 기업의 헌법적 근거

: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 > 기업의 자유

: 세무분야 플랫폼 기업도 개인의 직업의 자유보다 더 강한 제한

- 법적 쟁점3: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

: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광고형 플랫폼 허용,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차단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그러나 플랫폼의 매칭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성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위반)

1)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3)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및 광고 문제

2. 토론자의 의견과 질문

(1) 토론자의 의견

- 아이웨딩.com

: 결혼 및 혼수시장의 오프라인 플랫폼. 그러나 전문자격사 제도나 공익과 거리 있음

- ‘로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헌마619)

: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회원비를 받고, 고객이 변호사들을 선택해 연결되는 서비스 제공. 사건마다 수수료를 따로 받는 모델은 불법 브로커이지만 로톡은 정액의 회원료 개념의 광고형 플랫폼이며 ‘강남언니’처럼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아님

: 독일에서도 중개 플랫폼이 단순한 광고나 중개하는 기능에 한정한다면 변호사법의 위반 여지는 없다고 봄. 또한 연방헌재는 변호사가 법률분야 플랫폼을 통하여 개별적 사안에 대한 수입의 취득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광고를 통한 직업적 외부 표현이 직업행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1호 후단⁵⁾)과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동규정 제4조 14호⁶⁾와 제8조 제2항 4호⁷⁾) 위반 결정

: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한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규정’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 부분 역시 기본권을 침해

: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변협 내규의 일부 위헌 결정

: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규정 제4조 13호와 제5조 제2항 3호에 대해, “법률 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5)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6)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7)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

- ‘강남언니’에 대한 형사판결

- : 성형·미용정보 플랫폼 앱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시술 쿠폰 판매가격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
- : 이 앱을 이용해 환자를 소개받은(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원을 지불) 현직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 ‘삼점삼’의 구조와 현황

- : ‘삼점삼’은 세무·회계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 ‘자비스엔빌런즈’가 만든 세무·회계 대리 플랫폼으로서 라이더나 아르바이트 등 개인 사업 소득자가 보통 ‘3.3%’의 원천세를 내고 급여를 받은 후 세금을 돌려받는데 착안(5년까지 소급하여 환급 가능)해 명명
- : 근로소득만 있거나 5월의 종소세 신고자는 환급액 대상이 아니라 필요 없음
- : 2020.5. 출시 이후 현재 1000만명 이상 고객 확보. 누적 환급액 4892억 원(약 10%를 수수료이며 누적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추산)

- ‘삼점삼’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결정(2022.8.18.)

- : ‘삼점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가 아님
- : ‘삼점삼’이 세무사 소개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도 없음
- : 경찰은 2022.5. 불기소 처분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번 수사에 참고

(2) 토론자의 질문

- 강남언니, 로톡과 ‘삼쩜삼’의 구조는 다른가?
- 경찰의 무혐의결정은 정당한가?
-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는?

토 론 문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

1. 논의의 시작

-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에 대한 김상겸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문직 플랫폼의 일종으로서의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의 현황 및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현황을 국내외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셨고, 세무분야 플랫폼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검토를 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교수님께서 쟁점으로 제시하여 주신 것은 1)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 2)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및 광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이와 같은 김상겸 교수님의 문제제기에 이어 전문자격제도의 하나인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전문자격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더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국가자격제도의 의미

-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서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 동안 그 업역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자격제도를 유지해온 각각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세무사제도의 경우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는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세무사법」 제1조, 제2조)
- 국가자격제도 중에서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경우는 근거법률에서 자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제도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알선·소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 특정한 전문적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관련 영업의 업무개시요건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 시험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알선·소개 금지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소개·알선 금지를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¹⁾
- 국가전문자격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불법 알선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중개수수료다. 변호사 알선 및 유인 혐의가 제기됐던 로톡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광고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수수료에 대한 영리 목적의 소개 및 알선 혐의가 인정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22년 8월 16일자,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37> 기사.

* 참고: 국가자격제도의 분류 및 현황²⁾

〈표〉 자격제도 분류 및 현황

(2018. 5월 기준)

구 분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관련법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86개 개별법령 (25개 부.처.청.위원회)	자격기본법(교육부) (15개 부.처.청.위원회)	자격기본법(교육부) (34개 부.처.청.위원회)
종목수	527개	176개 직종*	100개 직종 *(61개 기관)	30,050개 직종 *(6,241개 기관)
자격종류 (예)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산업안전지도사(산업 안전보건법) 등	실용수학, TEPS 등	연구개발관리사, 심리상담사 등

기존의 자격관련 논의에서는 국가자격제도를 크게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에 특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과 단순히 “특정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격이 활용되고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자격” 두 가지로 나뉘고, 전자는 업무독점형 자격으로 후자는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구분해 왔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자격제도의 유형을 유자격자에게 업무 또는 영업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와, 영업활동을 자격자만 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으나 자격자에게 자격 명칭을 부여하여 기술.기능을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직업능력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자격명칭 독점을 인정하며,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개별법에서는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로 강화되기도 한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³⁾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업무독점형태를 부과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 개인이 특정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측면을 가지므로 이와 같은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법적 구조가 규제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가져오고 자유로운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성격의 국가자격 역시 규제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2) 백옥선,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55면 이하.

일반적 자격 분류방식에서 면허형으로 명명되는 자격의 경우에는 근거법률에서 자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조항을 다수 포함하게 되고, 의무고용형 자격의 경우에도 특정인이 해당 업무 및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포함한 자유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가자격 중에서도 규제성격을 띠는 자격제도의 경우 해당 사업이나 직무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허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개인의 자격에 대한 면허는 일반적인 면허와 달리 금지·해제적 관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격에 대한 면허를 본질적으로 허가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 다만, 국가자격 중 독점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자격규제에 대해서는 허가적 성격보다는 특허적 성격으로 보거나, 특허적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다. 이는 자격부분과 영업부분에 대한 규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그동안 자격규제 혹은 자격입법에 대한 범주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법제에서의 자격은 「자격기본법」을 비롯하여 모두 직업 관련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 역시 전통적으로 직업수행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격규제는 결국 직업수행 또는 사업(영업)수행을 위한 사업(영업)규제와 결부되어 있다. 지금까지 자격규제와 사업규제를 구분하지 않아왔고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와 유사한 체계로 자격관련 법제를 정하는 일본에서도 2000년도에 이루어진 자격전반에 관한 검토의 배경을 “국가자격제도는 사회 경제의 복잡·고도화에 따른 각종 전문 지식·기능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배경으로 순차로 창설한 것이지만, 실상 전모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바 있고, 아마도 전모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전반에 걸친 체계적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⁵⁾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허가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격부여를 받은 이후 영업을 할 것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특허적 성격으로 규정되는 경우 엄밀하게는 자격규제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12, 318-319면.

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12, 120면.

5) 일본 총무성, 규제 행정에 관한 조사 - 자격 제도 등 - 결과에 따른 권고(規制行政に関する調査 - 資格制度等 - 結果に基づく勧告,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kisei_sikaku.htm, 2018. 10.15. 최종방문).

3.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와 지역 내부 갈등

-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는 비단 세무분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최근 세무분야 플랫폼 이외에도 변호사 분야 플랫폼, 의료 분야 플랫폼 등 다양한 전문직 분야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최근 변호사 광고 플랫폼 관련 사례 등 전문직 플랫폼 등장 이후 지역 내 갈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로톡’ 서비스 분쟁이 업계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⁶⁾
-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변호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적·영리 플랫폼의 등장 및 이로 인한 시장 과열은 전문직역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전문자격제도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전문자격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전문자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에도 일부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⁷⁾
-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영리플랫폼의 업역 독점

- 기존의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장점을 앞세워 시작한 출발과 달리 경제 권력화하면서 각 분야의 독점 기업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음식점(배달), 택시,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통업 및 금융산업까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용자(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처음 시작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그 출발 당시의 생각과 시간이 흐른 뒤의 양태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헤럴드 경제, 2022년 8월 22일자, 변호사들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로톡 분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22000150> 기사.

7) (협)회가 지나친 집단이익 추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 최근 카카오택시가 가맹택시에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 ‘승객 몰아주기’ 의심을 받은 일이라던가,⁸⁾ 충성고객에게 더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고 직원 리뷰를 통해 평점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의 사례⁹⁾ 등에서 독과점의 폐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술 ‘혁신’이라는 강력한 수사(修辭)에 기대어 기존의 법규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해충돌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¹⁰⁾
- 전문직 플랫폼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직 플랫폼이 영리플랫폼으로 출발하여 향후 독과점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영리플랫폼의 독점적 시장지배 하에서 적절한 선택권 없이 가격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전문직 플랫폼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운영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고형으로 구성된다면 소비자와 전문자격자의 매칭을 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담보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관련 불명확성

- 전문직 플랫폼에 가입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세무전문 플랫폼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게 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전문 플랫폼의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8) 매일경제, 2022년 5월 3일자, 매경포럼: 카카오택시 ‘독점의 굴레’ 벗기,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05/390631/> 기사.

9) 비즈한국, 2022년 6월 21일자, ‘새벽배송’ 주문했는데, 쿠팡 맘대로 ‘당일배송’ 그게 고객 탓?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920> 기사.

10) 권오성,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2022년 8월 10일 자료집, 28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과장 광고에 대한 지적도 삼쩜삼이 직면한 또 다른 범주의 논란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은 주민번호,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수집 등이 최소수집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으며 쉽고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일부 광고문 구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삼쩜삼 조회라도 해본적 있는 사람들 당장 홈택스 가서 세무대리인 해임하세요...소득정보 조회는 물론이고 각종 민원증명까지 마음대로 뚫 수 있어요. 심지어 기존 세무대리인까지 해임돼 있음”이라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2022년 8월 16일자 기사.

-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해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플랫폼 가입시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한 방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세무분야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검토가 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4.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 방안

- 전문직 플랫폼은 우리 전문자격제도 관련 법률상 포섭되는가, 혹은 포섭되지 않는가, 만약 포섭된다면 어떤 규율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문직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직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자격제도 관련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직 플랫폼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리 기반 사적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및 토론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므로 그 자료를 소개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의 주된 결론은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전문직 플랫폼의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함택동 연구원 (한국세무사회) |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토론문

함택동 (한국세무사회 전문연구원 / 법학박사)

1. 전문자격사 플랫폼 분쟁 현황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세무사법 위반 고소·고발 주요 내용]

- 무자격 세무대리 위반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위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위반
(세무사법 제2조의2)
- 세무사 명의대여
(세무사법 제12조의3)
- 부당한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삼점삼.

경찰
불송치
결정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 무자격 세무대리 및 세무사 명의대여

5월 환급,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천만의 환급서비스

5월 환급 시작하기

$$\begin{array}{|c|} \hline \text{고객} \\ \hline 1\text{천만} \\ \hline \end{array} \div \begin{array}{|c|} \hline \text{파트너} \\ \text{세무사} \\ \hline 100\text{명}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파트너세무사} \\ \text{1명당 고객} \\ \hline 10\text{만명} \\ \hline \end{array}$$

세무사 1명 10만명 환급 대행 가능한가?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 무자격 세무대리 및 세무사 명의대여

삼점삼 및 경찰 인정 사실

-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는 고객이 주도적으로 환급 신청
- 삼점삼 서비스의 세무상담 및 신고 등을 파트너세무사가 직접 처리(서비스 이용시 국세청에 세무대리인 자동지정)
- 2021.11.23.이후 삼점삼 서비스의 세무대리는 파트너세무사 甲 세무법인에서 모두 처리

사례

무자격자가 세무사들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과세기간에 약 1,000여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 무자격 세무대리 및 세무사 명의대여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는
고객이 주도적으로 환급 신청



고객이 주도적으로 신청하는데,
왜 '세금환급 조회'만 해도
세무대리인이 지정되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2021.11.23.이후 삼점삼 서비스의
세무대리는 파트너세무사 甲
세무법인에서 모두 처리



세무법인 한 곳에서 삼점삼
서비스의 세무대리가
모두 가능한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

삼점삼 무자격 세무대리 / 삼점삼·파트너세무사 명의대여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 무자격 세무대리 및 세무사 명의대여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명의대여)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하여 온 세무조정계산서에 자기 자신의 기명날인을 한 세무사에 대하여는 형이 보다 가벼운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죄의 적용만이 문제될 뿐이고 형이 무거운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업무로 기장을 대행하고 그 장부에 기하여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까지 마친 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을 가지고 가서 그의 기명날인을 받았다면, 비록 기명날인을 한 세무사가 그 사건을 자기의 수임사건으로 사건부에 기재하고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적인 점을 검토한 후 기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 있는 자의 명의만을 빌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여,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 세무대리 소개·알선

LAWTALK →

광고형 플랫폼

삼점삼. →

중개형 플랫폼

■ 세무대리 소개·알선 관련 삼점삼 이용약관(2022.4.24.버전)

- 제2조 (용어의 정의) 5. "파트너세무사"라 함은 회원이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사들을 말합니다.
- 제6조(서비스의 내용) ④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세금 납부/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지 않으며, 해당 신고는 파트너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제8조(이용료 등) ② 파트너세무사가 회원의 세금 납부/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회원이 지급하는 전항의 이용료 중 신고수수료는 해당 파트너세무사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 세무대리 소개·알선

삼점삼.

5월 환급,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천만의 환급서비스

5월 환급 시작하기

삼점삼
및
경찰
인정
사실

- 2021.11.23.이전 파트너세무사들이 고객을 연결받을 때(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세무사들이 직접 세무대리 후 그 서비스 이용료를 삼점삼 운영사와 분배
- 2021.11.23.이후 세무사가 개입하는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파트너세무사 甲 세무법인에 지급

삼점삼은 세금 환급서비스 플랫폼
‘천만의 환급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파트너세무사에게
지급하면 삼점삼은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나?

2.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의 세무사법 위반 검토

▪ 세무대리 소개·알선

소개·알선 대가

돈이나 금융이익, 음식물 등 제한 없음.
(변호사법 제34조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2021.11.23.이전까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대가로 분배했던 이용료를 2021.11.23.이후에는 다른 대가 없이 파트너 세무사에게만 지급할 수 있나?



- 삼점삼 운영사와 그 대표, 파트너세무사와 세무법인 등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세무조사 필요
- 2021.11.23.이전까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대가로 분배했던 이용료는 다른 명목(파트너세무사가 삼점삼 운영사의 세무대리를 낮은 보수로 수행하거나 플랫폼 유지·관리비 높게 지급 하는 등)으로 받을 수 있음.

3.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 제한



- 목적 :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도모(세무사법 제1조)
- 사명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 업무
수행 요건

- 세무사자격 + 실무교육 6개월 이수 + 세무사등록

세무사 의무

- 비밀엄수, 성실의무, 탈세상담금지, 명의대여금지, 금품제공금지, 연고관계 선전금지, 영리업무종사금지, 손해배상책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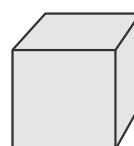
전문성 검증 없는 자에 의한 부실 세무대리 방지 및 국민의 납세의무 적절한 이행

세무대리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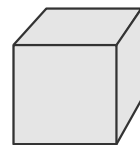
전문성 검증 X 세무사법 적용 X 국가의 관리·감독 X
➡ 공공성·공익성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 제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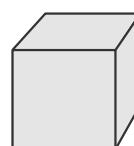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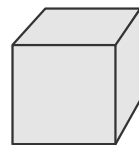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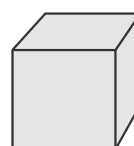
MEMO



MEMO



MEMO



제23회 한국세무포럼 <비매품>

인쇄일 2022년 8월 25일

발행일 2022년 8월 26일

발행인 원 경 희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전화 (대표) 521-9544